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가. 제안이유

- 통·반장 선출방법과 임기를 변경하여 통·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통장은 통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거나 동 단체 대표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고,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 통·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회수는 2회에서 1회로 제한함.(안 제5조제4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개정조례안에서 정한 동 단체 대표의 범위는?	○ 자생단체임.(자치행정과장)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통장 선출방법에 있어 직선제와 간선제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 직선제로 인해 지역주민 간 갈등 사례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여건에 따라 동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자치행정과장)
○ 자생단체 대표들로 통장심사협의회를 구성하면 단체원들만 통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치행정과장)
○ 반장을 주민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통장이 추천하여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통장선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주민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 직선제와 간선제에 대한 병행규정을 두더라도 대부분 직선방법을 통해 통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며, 다만, 통장직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자치행정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장을 선출하면서 어느 정도 직선제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간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개정조례 안에 정한 통장 임기 조정을 통해 통장선거 횟수를 줄이고, 통·반장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찬성토론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45호
의결 년월일	2008. 12. 12.

제안년월일 : 2008. 12. 12.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장을 선출하면서 어느 정도 직선제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통장선출심사회를 구성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간선제를 도입 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심사회의 결정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므로 통·반장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통장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 중 “통장은 통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거나 동 단체 대표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고, 반장은 주민이 선출한다”를 현행 조례대로 수정함.

(안 제5조 제3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3항을 현행 조례대로 수정한다.

③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거나 통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통·반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② (생략)</p> <p>③ <u>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고</u> <u>통장은 반장이 선출하거나</u> <u>통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할</u> <u>수 있다. 다만, 통·반장 선</u> <u>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u> <u>로 정한다.</u></p> <p>④ <u>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u> <u>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u> <u>따라 2회에 한하여 연임할</u> <u>수 있다.</u></p> <p>⑤ (생략)</p>	<p>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② (생략)</p> <p>③ <u>통장은 통주민이 선출하</u> <u>거나 동 단체 대표로 구성</u> <u>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u> <u>출하고, 반장은 주민이 선</u> <u>출한다.</u></p> <p>④ <u>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u> <u>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u> <u>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u> <u>수 있다.</u></p> <p>⑤ (생략)</p>	<p>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② (생략)</p> <p>③ <u>(현행과 같음)</u></p> <p>④ <u>(개정안과 같음)</u></p> <p>⑤ (생략)</p>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2회”를 “1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수정안 포함]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2회”를 “1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③ (생략)</p> <p>1.~3. (생략)</p> <p>④ 통·반장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 따라 <u>2회</u>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③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④ -----<u>3년</u>----- -----<u>1회</u>----- -----.</p> <p>⑤ (현행과 같음)</p>